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2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3월 7일  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 정수를 확대하고, 탄력적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심사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전문가 4명을 20명으로 확대함(안 제6조제1항제2호).
- 심사위원회의 정수를 9명에서 25명으로 수정함(안 제6조제3항).
- 심사위원회 비상설 운영과 임기 관련 규정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설위원회로 두고, 임기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(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).
- 심사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2항).

-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과 시행일 등을 조정함  
(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: 20명

안 제6조제3항 중 “9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 구성한다.

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

및 제3항,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 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제3항의 개정  
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 
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.</p> <p><u>1.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</u>  <u>2.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</u></p> <p><u>3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b>9명</b>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.</p> <p><u>1. 의회 운영위원장</u>  <u>2.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: 4명(다만, 해당 공무국외활동 방문목적 및 대상지별 전문가 각각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)</u></p> <p><u>3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: 4명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1. 의회 운영위원장</u>  <u>2.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: 20명</u></p> <p><u>3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: 4명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b>25명</b>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.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⑤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8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<u>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(流會)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,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 12조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가 완료될 때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	<p><u>④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⑤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회의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 및 제3항,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위원회 위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9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한다.

1. 의회 운영위원장
2.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: 20명
3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: 4명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 및 제3항,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명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b>9명</b>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~⑥ (생략)</p> <p>제8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(流會)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의회 운영위원장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: 20명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: 4명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b>25명</b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